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19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황운하・정춘생・강경숙
김재원・장경태・김선민
한창민・차규근・박상혁
김준형・이해민・박은정
최혁진・백선희・서왕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함으로

써,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중 “검찰총장”을 각각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을 고발하거나 고발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고발) ① (생 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33조(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수사기관의 장----------.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 ④ (현행과 같음) ⑤ ----------관할 수사기관의 장----------. ⑥ (현행과 같음)